

2018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(안)

의안 번호	39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11. .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2018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(안)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2018년도 평창군기금조성 규모는 총 8개 기금 22,51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,305백만원이 증가하였음.

나. 기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음.

(단위:천원)

기금명	2017년도말 조성액 [㉠]	2018년 운용계획		2018년도말 조성액 $(d)=(a)+(b)-(c)$	증감 $(e)=(d)-(a)$
		수입 [㉡]	지출 [㉢]		
합계(8건)	21,213,024	2,930,982	1,626,192	22,517,814	1,304,790
통합관리기금	8,144,295	104,800	104,212	8,144,883	588
사회복지기금	7,164,508	829,832	87,200	7,907,140	742,632
체육진흥기금	4,458,746	58,008	30,000	4,486,754	28,008
식품진흥기금	112,929	40,615	42,280	111,264	△1,665
재난관리기금	0	112,840	112,500	340	340
옥외광고정비기금	802,312	759,485	950,000	611,797	△190,515
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	30,202	18,202	0	48,404	18,202
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	500,032	1,007,200	300,000	1,207,232	707,200

※ 수입 :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상환은 제외 / 지출 :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

※ 용자금은 지출 ㉢에 포함하여 계상함.

3. 관계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 제142조 (재산과 기금이 설치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**조례**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